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 6. 13.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5월 24일,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7년 5월 26일
- 다. 상정일자 : 제21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2017년 6월 13일)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징수과장 임태순

가.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법률 제14476호, 2016.12.27.공포, 2017.3.28.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내용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 규정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안 제3조)
-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세자 판단기준 규정
 -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세자(안 제4조)
- 기타 조례의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규정(3개 조항)
 - 목적(안 제1조), 법령과의 관계(안 제 2조), 시행규칙(안 제 5조)

3. 검토보고 (전문위원 유준상)

- 본 조례안은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법률 제14476호, 2016.12.27.공포, 2017.3.28.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내용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징수 조례」를 제정·운영하고자 함과 동시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 납세자의 상벌기준을 규칙으로 명시하여 많은 성실납세 구민들에게 투명한 법집행으로 세금 성실납부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